



냉동 전환 인터넷 신고방법



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



화면 위쪽의 “우리회사 안전
관리서비스” 클릭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우리회사민원”란의
“축산물 냉동전환” 메뉴에서
냉동전환 신고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관청(시·군·구)에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신고한 내용은 영업자가 임의로 수정 불가)



법적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

신고사항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 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 냉동 전환 시설의 소재지, 냉동 전환 실시일과 냉동 전환 완료일

준수사항

①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 실시,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② 냉동 전환 축산물에 표시기준 준수하여 표시할 것 ③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표시사항

“이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 표시, 해당 제품의 냉동 전환일,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
* 기존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됨

위반 시

① 냉동 전환 신고(변경 포함)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② 냉동 전환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 ① (행정처분) 영업정지 7일,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행정처분) 시정명령,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바로알기





주요 질의응답



Q1 식육판매업체도 냉동 전환 신고할 수 있나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제4호 바목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냉동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 전환 할 수 없으며 냉장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내에 냉장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Q2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장 닭고기(신선육)를 해체하여 바로 냉동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냉동 전환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신선육(냉장육)을 해체, 절단, 포장, 냉동하여 새로운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냉동 전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관청(시·군·구)에 냉동 닭고기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3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냉장육을 냉동 전환 신고할 수 있나요?

A 냉동 전환의 주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입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냉장제품을 냉동 전환 신고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직접 냉동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4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이 협소하여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다른 축산물 영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냉동 전환을 해도 되나요?

A 냉동전환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냉동시설을 갖춘 축산물 작업장 등에서 냉동 전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제4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냉동 전환 시설의 소재지를 해당 축산물 작업장으로 하여 냉동 전환 신고 후 냉동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Q5 냉장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냉장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A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냉장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냉동 전환 신고를 하는 것이며, 품목제조보고서상에 냉동 전환 관련 사실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6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냉장 포장육을 냉동전환 할 수 있나요?

A 포장육의 냉동 전환 주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이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냉동 전환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포장육이 포장 상태 그대로이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포장육을 생산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냉동 전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